

제주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가단5143 판결 [건물명도 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C 지상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D호 부분을 인도하고,
나. 1) 2,7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 2023. 10. 26.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9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원고가 2022. 2. 26.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290,000원으로 각 정하여
주문 제1항 기재 D호를 임대하였는바, 그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미지급과 장기간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인도청구와, 해지 이전의 연체차임
및 해지일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김은성

별지

1) 원고가 구하는 2023. 10. 25.까지의 연체차임이 청구취지에 3,32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기간 계산의 착각(2022. 2. 26.부터 2023. 10. 25.까지는 20개월인데 원고가 제출한
내역서에는 22개월로 되어 있음)으로 인한 단순 오기이고, 원고는 2024. 10. 30. 청구원인변경에
의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정하였으므로, 정정된 사실관계에 바탕하여 계산된 2,745,000원 [= 원래
청구취지의 3,325,000원 - (290,000원 × 2개월)]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